

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 비준동의안

의안 번호	18960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26. 5. 13.

제출자 : 정 부

제안이유

이 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함으로써, 양국간 무역을 자유화하고 서비스 시장 개방 폭을 확대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협력 촉진기반을 마련하는 등 양국간 경제통상관계를 한층 확대·강화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양 당사국은 「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」 제24조 및 「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」 제5조에 합치되게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함(안 제1.1조).

나. 각 당사국은 부속서 2-나에 규정된 자국 양허표에 따라 상대 당사국 원산지 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함(안 제2.4조 및 부속서 2-나).

다. 양 당사국은 교역을 활성화하고 우회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품목별 원산지 기준 등 특혜 원산지 규정을 마련함(안 제3.1조 및 부

속서 3-가).

라.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른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 상대 당사국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있음(안 제7.1조).

마. 각 당사국은 상대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내국민 대우와 해당 서비스 분야에 대해 최혜국대우를 부여함(안 제8.2조 및 제8.3조).

바. 양 당사국은 전자적으로 전송된 콘텐츠를 포함하여, 한쪽 당사국의 인과 다른 쪽 당사국의 인 간의 전자적 전송에 관세 미부과와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 등에 대한 규정 등을 마련함(안 제12.2조 및 제12.3조 등).

사. 양 당사국은 에너지 및 광물 자원, 제조 산업, 정보통신기술, 보건 의료 산업, 소상공인·중소기업 및 사회연대경제, 문화, 관광 등 상호 관심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고,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협력위원회를 설립하여 이 협정에 규정된 협력분야 활동을 운영 및 이행함(안 제18.2조 및 제18.4조 등).

참고사항

가. 영향평가결과 : 별첨 영향평가결과 참고

나. 예산조치 : 별첨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 참고
다. 국내산업 보완대책 : 별첨 국내산업 보완대책 참고
라. 입법조치 : 별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사항 참고
마. 추진경위

- 2015. 8. 25. 협상 개시 선언
- 2023. 10. 11. 협상 타결
- 2025. 7. 1. 제28회 국무회의 심의
- 2025. 9. 2. 서명(서울)

대한민국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 비준동의안

“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”에 정부가
비준하도록 「대한민국헌법」 제60조제1항에 따라 동의한다.

붙임 :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

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
전략적경제협력협정

**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
BETWEEN THE REPUBLIC OF KOREA
AND THE REPUBLIC OF ECUADOR**

**ACUERDO ESTRATÉGICO DE
COOPERACIÓN ECONÓMICA ENTRE
LA REPÚBLICA DE COREA Y LA
REPÚBLICA DE ECUADOR**